

제156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9. 16.(수) 15:50 ~ 17:1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4명

○ 해 양 경 찰 청 :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9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4건(원안의결 1, 수정의결 3)

【심의·의결 4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1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동해·포항광역 VTS 개국을 위한 관제구역 확대 •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족도해역 신고의무 추가 재상정 제8조제1항 긴급운항 관련 단서 부분 재검토	원안 의결 (일부 재상정)	해상 교통 관제
2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형소법」, 「수사준칙」 개정(10.2.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법령 정비 「해양경찰수사규칙」	수정 의결	수사 기획
3	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압수·수색·검증 절차 변경, 사건관계인 권리강화 등 8개 분야 24개 조문 개정·7개 신설, 별지 65개 정비·14개 서식 신설 수정사항 보호대상 고래류 발견 시 조치·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보 대상을 각 호로 구분	수정 의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제척·회피 강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근거 규정 신설 등 17개 조문 개정·1개 신설, 별지 43개 정비·3개 서식 신설, 3개 별표 개정 수정사항 오기 수정(큰따옴표)		
4	훈령 예규	공소청 신설 관련 해양경찰청 소관 수사관계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우리 청 소관 수사관계 행정규칙 5개(훈령 3, 예규 2) 일괄개정 - (개정 사항) 검찰청 → 공소청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수정 의결	
			수정사항 사건은 '송치'하고 기록은 '송부'하는 것 으로 명확하게 표현 수정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수정사항 오기 수정(경찰청 → 공소청)		

첨부1

수정의결 사항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등) ----- ----- <u>고래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u>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추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
수정사유 혼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에 대해 각 법률에 따른 통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보대상을 각 호로 분리	

□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41조의2(종이문서의 정정) ① (생 략) 1. · 2. (생 략) 3. 1행 중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할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u>삭제</u>” 또는 “몇자 <u>추가</u>”라고 적음 4. (생 략) ②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몇자 <u>추가</u>” 또는 “몇자 <u>삭제</u>”라고 적고 그 곳에 진술자에게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해야 한다.	제41조의2(종이문서의 정정) ①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삭제</u> ----- <u>추가</u> ----- 4. (현행과 같음) ② ----- ----- ----- <u>추가</u> ----- <u>삭제</u> ----- ----- -----.
수정사유 큰따옴표 오기 수정	

□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15조(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상 관할)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u>사건의</u> 영장을 신청하거나 <u>기록을 송치</u> 또는 <u>송부하는 경우</u> 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 및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	제15조(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상 관할) ----- ----- <u>사건에 대하여</u> ----- <u>송치</u> <u>하는 경우 또는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u> ----- <u>또는</u> ----- <u>해야한다.</u>
수정사유 사건은 '송치'하고 기록은 '송부'하는 것이므로, 표현을 명확히 수정하고, '및'은 양자를 포함하는 병렬적 의미인데 실제 송치 또는 송부 대상은 법원 또는 공소청 중 하나이므로 선택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으로 수정	

□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6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미 작성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u>공소청</u> 범죄분석담당관으로부터 신원을 재확인하거나 정정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건이 <u>검찰청에</u>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u>검찰청에</u> 추송해야 한다.	제6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 ----- ----- <u>경찰청</u> ----- ----- -----, <u>공소청에</u> ----- ----- <u>공소청에</u> ----- -----.
수정사유 오기 수정(공소청 → 경찰청, 검찰청 → 공소청)	

□ 위원장 인사 말씀

- 최근 직무범죄 및 징계 증가 여부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과거까지 확대하여 연도별 직무범죄·징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람.
-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신규 직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징계 사안이 나타나고 있음. 변화하는 직장 분위기와 양상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긴급운항 여부를 관제센터장이 판단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사전 승인 절차로 작용될 수 있는데, 수색·구조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긴급한 경우 우선 대응하고 사후적으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지.
- 육상의 긴급자동차와 달리 선박은 평상시에도 VTS 관제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음. 선박의 긴급운항 시에도 VHF 등을 통해 긴급운항 사유를 알려 관제센터가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관제센터는 해당 선박의 긴급운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관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상시 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번 개정은 긴급한 경우 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 별도의 판단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면 관제 예외를 신설하는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관제센터장이 해당 상황의 긴급성을 인정하도록 한다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실익이 없어질 수 있음. 기존의 보고·통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번 개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여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면 긴급성 판단을 관제센터장이 승인하는 구조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보임.
 - 긴급운항을 위해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긴급운항 선박 역시 자신의 위치·항로 등을 관제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관제센터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운항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긴급운항 여부와 별개로 관제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함.
- 도로교통법과 항공안전법에는 긴급자동차, 긴급목적 항공기를 법률로 지정하고 있음. 선박도 출항보고 등을 통해 긴급목적 운항임을 함께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닌 기존

관제보고 과정에 포함되는 사항임. 따라서 현재 운용상 별도의 승인으로 인하여 출항이 지연되는 구조는 아님.

- 운용 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보고와 승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신두절 등으로 관제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 긴급상황에서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면 출동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올해 긴급출항 과정에서 운항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개정안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상 가능한 긴급운항을 행정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임.

○ 긴급운항 예외대상에는 경비함정뿐 아니라 구난에 참여하는 민간 선박도 포함될 수 있음. 공공선박과 달리 민간선박은 긴급운항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모든 선박에 동일한 방식으로 관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경비함정 등 공공선박과 민간선박을 구분하여 긴급운항 요건이나 보고·통제방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 긴급한 구조·구호 상황에서 관제 예외를 인정하면서 다시 별도의 관제를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반면, 민간선박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신속한 긴급대응과 관제 안전 중 어느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람.

- 위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당초 제시한 수정의견을 재정리하고, 제8조제1항 단서 부분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고,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제8조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검토 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음.
- 제8조제1항 긴급운항 관련 단서 부분만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이번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의결하겠음.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이번 개정이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수사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수사준칙이 육상 사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경찰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마약·선박 충돌·공해상 및 국제선박 관련 사건 등 해양경찰 수사 특수성을 반영 하였음. 또한,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경찰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였음.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규칙에서 ‘경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독립적인 수사주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

이나 수사준칙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지?

-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인 수사주체가 되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여전히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권한과 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해양경찰 내부 규칙에서는 수사 책임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21년부터 '경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경찰관의 제척·회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육상경찰과 달리 수사인력이 제한적인 해양경찰에서 제척·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제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 경찰청과 달리 해양경찰은 동일 법원 내에 경찰서가 하나뿐인 경우가 있어 지방청 관할을 기준으로 인접 해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담당자를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설계하였음. 최근 5년간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해당 사례가 극히 적어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인력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형사소송법 및 다수의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선 직원들이 정확히 숙지·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 함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을 즉시 문의·확인할 수 있는 핫라인 등 지원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절차와 서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인력이 이를 숙지하고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절차 숙지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시간이 부족해질까봐 우려가 됨.
- 개정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영상·도식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수사부서와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본청과 지방청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의와 혼란에 대응할 계획임.